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30호

「2025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5호(2025.2.5.)에 따라 2025. 6. 21.(토) 시행하는 「2025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30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 일시

시험 일시	직급	직렬(직류)	비고
6. 21.(토) 10:00~11:50 (110분)	8급 9급	간호, 보건진료 일반행정, 지방세, 전산, 사회복지, 사서, 속기, 일반기계, 일반전기, 일반화공, 일반농업, 축산, 산림자원, 조경, 일반해양, 일반수산, 보건, 의료기술, 일반환경, 도시계획, 일반토목, 건축, 지적, 디자인, 방재안전, 통신기술	09:20까지 입실 완료

※ 편의지원 대상 중 시험시간 연장(1.5배) 시험실의 시험시간은 165분(10:00~12:45)입니다.

2. 시험 장소

구분	시험장소	임용예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창원권역 (17개 학교)	경남관광고등학교, 창원공업고등학교, 창원대방중학교, 안남중학교, 창원상남중학교, 명서중학교, 남산중학교, 창원중앙중학교, 창원남중학교, 신월중학교, 사파중학교, 광려중학교, 마산서중학교, 마산동중학교, 창신중학교, 마산무학여중학교, 동진중학교	경상남도, 창원시, 통영시,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도일관	함안군의회
진주권역 (7개 학교)	경남자동차고등학교, 진주동중학교,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 삼현여자중학교, 진명여자중학교, 진주중앙중학교, 진주봉원중학교	진주시, 사천시,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진주시의회, 사천시의회, 의령군의회, 하동군의회, 산청군의회
김해권역 (6개 학교)	수남중학교, 월산중학교, 내덕중학교, 삼정중학교, 분성중학교, 능동중학교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김해시의회, 거제시의회

- ※ 응시자는 본인에게 배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 가능하며, 타 시험장(학교)에서는 절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붙임1] '2025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안내'를 열람하여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을 확인하시고, 응시표에 기재된 시험장과의 일치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 임용기관, 응시직류 및 장애편의지원 대상자에 따라 시험장소가 창원·진주·김해권역으로 구분되므로 본인의 응시번호와 시험장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 도 일괄 모집 직렬(장애, 저소득) 응시자의 시험장소는 창원권역 시험장이니, 본인의 응시 번호와 시험장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 이번 필기시험 과목 중 경상남도에서 자체 출제하는 과목이 포함된 직렬(축산, 조경, 일반해양, 일반수산, 의료기술, 도시계획, 디자인) 응시자의 시험장소는 마산동종, 창신중임
- ※ 장애인, 임신부 등 편의지원 대상자의 시험장소는 창원남산중학교, 김해월산중, 진주 삼현여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2] '2025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대상 결정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람

3.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 가.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25. 7. 11.\(금\)](#) 경상남도 홈페이지 경남소식(시험 정보란)에 게시합니다.
- 나. 필기시험 성적은 아래 안내된 기간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상	조회기간	비고
필기시험 불합격자 개인별 성적 조회	2025.07.11.~ 2026.12.31.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필기시험 합격자 개인별 성적 조회	2025.09.12.~ 2026.12.31.	

4. 응시자 준수사항

[일반사항]

- 가. 응시자는 시험 전 시험장소, 교통편, 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고,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가 불가합니다.
-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08:10 이후 시험장 개방](#))
- 다.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식수 및 화장지는 시험장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필요할 경우 응시자가 준비하여야 합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시험실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

※ 단,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편의지원 대상자의 경우**, 시험시간 중 제한 없이 화장실 사용이 가능하며, 이때 **화장실 사용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됨**

라.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계획 공고문(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5호)에 안내된 가산특전의 종류와 가점 비율을 확인하고,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당해시험 필기시험일을 포함한 3일 이내(2025.6.21. ~ 6.23.)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취업지원, 의사상자, 기술 자격·면허증의 명칭과 증명번호 등을 본인이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 잘못 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 사유이며, 특히 미등록(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가산특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됨

마. 응시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1) **응시표**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5.30.(금)**부터 **출력 가능**

2)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유효한 여권, 주민 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국가보훈등록증 중 하나

※ **모바일 신분증**, 공무원증, 학생증, 자격수첩,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 응시원서 접수 이후 개명한 응시자는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법원의 개명 결정문 등) 지참

※ 응시표 출력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인쇄 또는 메모된 응시표를 시험시간 중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바. 휴대폰, 무선호출기, 이어폰, 스마트워치, 녹화기능이 탑재된 기기(안경 등) 등의 **통신장비**와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의 전산기기를 시험실에 소지하고 입실할 수는 있으나, **시험시간 중에는 몸에 소지할 수 없습니다.**

소지한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반드시 시험시작 전에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원을 차단한 후 소지품과 함께 시험실 전면에 비치하여야 하며, 시험 시간 중에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 모자, 귀마개(소음방지용) 등 사용 희망 시 감독관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함

사.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 감독관의 시험시간 종료 예고 및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시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간 중 계산·통신이 가능한 시계(스마트워치 등)를 소지한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함

아. 점수산출은 전산기기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며, 별도로 제공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 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 흑색펜, 적색펜, 연필, 샤프펜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답안지에 예비표기하거나, 답안지 오염·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된 경우에도 전산기기 판독 결과에 따른

자.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이후에는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으며,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 시작 전까지는 문제 내용을 열람하면 안됩니다.**

※ 시험 시작 전 문제 열람 시, 부정행위자로 간주되어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될 수 있음

차. 응시자는 시험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문제책 앞면에 표시된 책형을 확인한 후 답안지 책형란에 해당 책형을 기재(표기)하여야 합니다.**

※ 책형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당해시험 무효 처리 등)을 받을 수 있음

카.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책 편철이 표지의 과목순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문제 누락, 문제책 파손 등 **인쇄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제 누락, 문제책 파손의 경우 시험 감독관에게 문제책 교체를 요구하여야 하며, 문제책 확인을 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타. **답안은 반드시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 순서대로 채점됩니다.**

파.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보기>와 같이 “●”로 정확하게 표기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보기> 올바른 표기 : ● / 잘못된 표기 : ○ × ◎ ① ② ③

하.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시험시간 중 타인의 수정테이프를 빌리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수정테이프가 없는 경우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주어야 함(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 마크(|||||)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됨

- 거. 시험시간 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 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 처분합니다.
- 너. 시험종료 후 시험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사용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더.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및 【참고】'부정행위 등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에 대하여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라. 이번 시험의 문제책 중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의 문제는 공개하므로 시험 종료 후 회수하지 않으나, 아래 표의 과목 문제책은 경상남도에서 자체 출제한 과목으로 문제 및 정답을 비공개하며, **시험종료 후 회수하므로 절대 가져갈 수 없습니다.**

문제 비공개 시험과목 (시험 종료 후 회수)
가축사양, 가축육종,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해양학개론, 해양조사방법론, 수산일반, 수산경영, 해부생리학개론,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디자인기획론, 공공디자인행정론

- 머. 이번 시험은 필기시험성적 사전공개를 시행하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3] '필기시험성적 사전공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 가. 시험장(학교) 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응시자 차량은 주차가 불가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나. 시험장 전역(교실, 복도, 화장실 등)은 금연시설이며, 학교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시험장 출입 시 입구에 구비되어 있는 덧신을 착용한 후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 라. 시험장 방역에 관한 사항은 정부 방역지침에 따릅니다.
- 마. 기타 의문 사항은 경남도청 인사과 고시교육담당(055-211-35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 고 **부정행위 등 금지사항**

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1항 제1호 ~ 제6호 위반행위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2항 제1호~제4호 위반행위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2항 제4호 관련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주고받는 행위
- 기타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한 시험 관리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